

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. 7. 16 선고 2019가단192 판결 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등 청구]

전 문

원고A

소송대리인 B

피고C 주식회사

변론 종결무변론

판결 선고 2019. 7. 16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익산등기소 2008. 3. 4. 접수 제1171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'청구원인'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(무변론 판결)

판사조유진

별지